

수신 : 회원제위

참조 :

제목 :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

1.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김남근, 더민주, 국토교통위원회, 의안번호2221815('26. 10. 6), (이용선, 더민주, 국토교통위원회 의안번호2221805('26. 10. 6) 이 발의되어 알려드리니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2026. 10. 15(목)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다 음 -

□ 주요내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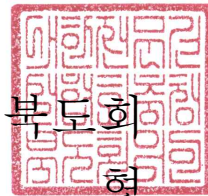
<의안번호 2221815('26. 10. 6 김남근 의원)>

- 종합공사 동일업종 하도급시 발주자 서면 승낙 의무화
(안 제29조제2항)

<의안번호 2221805('26. 10. 6 이용선 의원)>

- 발주자로부터 수령한 선급금·하도급대금의 지급 기한 단축(15일→7일)
(안 제34조제1항·제4항)

대한전문건설협회 충청북도회
회 장 류 근 형



담당자 부장 김영은 실장 하재중

시행 전건협 충북 제 647 호 (2026. 10. 12)

우 28776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중흥로 16(용암동) 전문건설회관 7층 / <http://www.chungbuk.kosca.or.kr>

전화 043-294-7671 전송 043-294-7675 / 전자우편

의견제출서

☐ 검토의견

현행	개정 의견	사유

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

2026년 10월 일

상 호
대표자 (인)
주 소

대한전문건설협회 충청북도회장 귀하